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 미 시

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에코랜드 내 짚코스터 신설로 인한 이용료 등 체계를 확립하고, 구미에코랜드 시설물 이용료 등 반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구미에코랜드 내 짚코스터 신설로 인한 내용 추가 (안 제3조, 제9조, 별표 1~별표 5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모노레일”을 “모노레일, 짚코스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모노레일 및”을 “모노레일, 짚코스터 및”으로 한다.

별표1에서 별표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구미에코랜드 시설 현황(제2조 관련)

구분	위치	층별	시 설 명	주요구조	면 적	비 고
산림 문화관	산동읍 인덕 1길 240	옥외	디목적잔디광장, 물빛정원, 염료식물원,주차장	방문객 쉼터	27,000㎡	
		지하	기계실, 수장고	철 근 콘크리트	3,856㎡	
		지상 1층	산림생태 전시/체험장, 영상관, 카페테리아, 관리사무실	"	"	
		지상 2층	산림생태 전시/체험장 녹색체험교실	"	"	
		지상 3층	모노레일 탑승 대기실	"	"	
모노 레일	〃		생태탐방 모노레일	모노레일 및 정거장		모노레일(1.8km), 정거장(3개소), 차량(8인승 7대)
짚 코스터	〃		짚코스터	짚코스터, 출발지, 도착지		짚코스터(400m), 출발지·도착지, 공중화장실, 창고 등
산동참 생태숲	〃		산동참생태숲	목공예체험장, 숲속쉼터 등	100,000㎡	관리사무소(1동), 숲속 교실(1동), 관찰원(1동), 목공예체험장(1동) 등
자생 식물 단지	〃		자생식물단지	자생식물 관찰장	80,000㎡	야생화단지(1동), 탐방로, 테마원(1동), 숲속교실(1동), 습지관찰원(1동), 간이온실(1동) 등
산림 복합 체험 단지	〃		산림복합체험단지	산채체험장, 연구시험장	400,000㎡	체험활동·소득생산지구(31ha), 연구시험지구(9ha), 육묘장(1동), 퇴비장(1동), 탐방로(5.7km), 관수시설
어린이 테마 교과숲	〃		어린이테마교과숲	교과별 수목식재, 숲속교실, 숲속도서관 등	12,000㎡	
문수 산림 욕장	〃		문수산림욕장	등산로, 편의시설	100ha	전망대(인덕정),목교, 주차장, 등산로 7.8km 운동시설, 평의자 등

[별표 2]

구미에코랜드 이용시간(제5조 관련)

□ 산림문화관, 모노레일, 짚코스터 이용시간

구 분	이용시간	비 고
산림문화관 관람시간	· 09:00~18:00 (17:30분 입장마감)	
생태탐방 모노레일	· 동절기 : 09:00~16:00 · 하절기 : 09:00~17:00	※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(기상악화, 결빙 등)
짚코스터	· 동절기 : 10:00~16:30 · 하절기 : 10:00~17:30	

※ 동절기 : 11월~2월, 하절기 : 3월~10월

[별표 3]

시설이용료, 체험활동비(수강료) 기준(제7조 관련)

□ 생태탐방 모노레일 이용료

구 분	기 준	개 인	단 체 (20인 이상)	비 고
어른(19세 이상 64세 이하)	1회	6,000	5,000원	
어르신(65세 이상) 청소년 및 어린이 (3세 이상 18세 이하)	1회	4,000	3,000원	※3세 미만 무료

□ 짚코스터 이용료

구 분	기 준	개 인	단 체 (20인 이상)	비 고
어른(19세 이상 64세 이하)	1회	10,000	8,000원	
청소년(11세 이상 18세 이하)	1회	8,000	6,000원	

□ 체험활동비(수강료)

구분	기준	금액		비고
		어르신 (65세 이상) 청소년 및 어린이 (3세 이상 18세 이하)	어른 (19세 이상 64세 이하)	
녹색체험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	1명/1개월	15,000원 ~ 40,000원	20,000원 ~ 60,000원	○ 프로그램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. ○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	1명/1시간 이하	2,000원 ~ 5,000원	3,000원 ~ 8,000원	

※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[별표 4]

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, 체험활동비 감면(제8조 관련)

구 분		감 면 율	비 고
생태탐방 모노레일 및 짚코스터 이 용 료	- 구미시민	50%	
	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	60%	
	-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	60%	
	-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명	60%	
	- 국가보훈대상자	60%	
	- 홍보행사 등의 수상자(당첨자)	100%	※무료쿠폰지급 - 1회무료/3회수상
체험활동비 (수강료)	- 구미시민	50%	
	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	100%	
	-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	100%	
	-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명	100%	
	- 국가보훈대상자	100%	

※ 비 고

-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
-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
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제26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.
-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
- 장애인이란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별표1을 따른다.
- 국가보훈대상자란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.
-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.

[별표 5]

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등 반환기준(제10조 관련)

1. 시설이용료(모노레일, 짚코스터) 반환기준

구분	해지유형	처리기준
이용자의 귀책사유	□ 생태탐방 모노레일, 짚코스터	
	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	• 계약금 환급 (티켓금액의 100% 환불)
	•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	• 총 요금의 10% 공제후 환급 (티켓금액의 90% 환불)
	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	• 총 요금의 30% 공제후 환급 (티켓금액의 70% 환불)
	• 사용예정일 당일(탑승시간 전) 취소	• 총 요금의 50% 공제후 환급 (티켓금액의 50% 환불)
	• 사용예정일 당일(탑승시간 후)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	• 총 요금의 100% 공제 **(환불불가)**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사유		• 계약금 환급 (티켓금액의 100% 환불)
시설운영자 귀책사유	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	• 계약금 환급 (티켓금액의 100% 환불)
	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	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
	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	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
	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	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% 배상
	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80% 배상

※ 비고

1.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사용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당일(탑승시간 후) 취소로 본다.
2. 시설운영자가 당일 탑승전까지 이용자에게 모노레일 및 짚코스터 이용제한을 사전통보 하였을 경우 배상금은 제외한다.

2. 체험활동비(수강료) 반환기준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반환사유 발생일</th><th>반환금액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모집정원 미달 등 구미에코랜드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</td><td>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</td><td>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</td><td rowspan="3">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</td><td>강의개시 이전</td><td>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</td></tr>
<tr><td>총 강의시간의 1/3경과 전</td><td>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</td></tr>
<tr><td>총 강의시간의 1/2경과 전</td><td>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</td><td>총 강의시간의 1/2경과 후</td><td>반환하지 아니함</td></tr>
<tr><td>강의개시 이전</td><td>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강의개시 이후</td><td>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비 고</td><td colspan="2">1.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1일 체험활동비는 강의개시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td></tr>
</table>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구미에코랜드”란 산동읍 인덕리 산5-1번지 일원에 조성한 구미시산림문화관(이하 “산림문화관”이라 한다), 모노레일, 산동참생태숲, 자생식물단지, 산림복합체험단지, 어린이테마교과숲, 문수산림욕장 등의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을 말한다. 2.・3. (생 략)	제3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모노레일, 짚코스터----------. 2.・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시설의 예약) ① 모노레일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(이하 모노레일 등)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. ② ~ ⑥ (생 략)	제9조(시설의 예약) ① 모노레일, 짚코스터 및 -----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)

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9조의9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

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・구미에코랜드 내 짚코스터 신설에 따라 운영에 따른 세입·세출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구미에코랜드 운영비 산정, 짚코스터 이용료 등 기본시설 사용료를 근거하여 세입·세출 등을 기초로 함.

나.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.

다. 운영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(2%)을 매년 적용한다.

※ 짚코스터 이용료

기 준	이 용 료(개인)		이 용 료(단체)		비고
	관내거주	관외거주	관내거주	관외거주	
어른(19세이상 64세이하)	5,000원	10,000원	4,000원	8,000원	
청소년(11세 이상 18세 이하)	4,000원	8,000원	3,000원	6,000원	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개월)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◦ 짚코스터 이용료	25,200	173,648	177,080	179,368	182,784	738,080
	소계(a)	25,200	173,648	177,080	179,368	182,784	738,080
세출	◦ 짚코스터 운영비	25,200	176,060	179,580	183,158	186,804	750,802
	소계(b)	25,200	176,060	179,580	183,158	186,804	750,802
□ 총 비용(a-b)		-	-2,412	-2,500	-3,790	-4,020	-12,722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개월)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
도비						
시비	25,200	176,060	179,580	183,158	186,804	750,802
민간						
기타						
합계	25,200	176,060	179,580	183,158	186,804	750,802

5. 부대의견 : 세입(짚코스터 이용료) 및 세출(짚코스터 운영비) 예산은 추정비로서,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산림과 정용대(054-480-5887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세입

• 짚코스터 이용료 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3년 (2개월)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짚코스터	관 내 거 주	12,600	83,351	79,686	77,128	73,114
	관 외 거 주	12,600	90,297	97,394	102,240	109,670
	소 계	25,200	173,648	177,080	179,368	182,784

※ 짚코스터 이용 인원 : 20명/시간, 하절기(3~10월)-120명/일, 동절기(11~2월)-100명/일
지역 및 연령별 이용 인원 : 관내(40~50%), 관외(50~60%), 성인(80%), 청소년(20%)

2. 세출

• 짚코스터 연간운영비 산정 (단위: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개월)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인건비	정 규 직 원 (1 명)	7,500	45,900	46,818	47,748	48,702	196,668
	기 간 제 (3 명)	16,200	99,144	101,126	103,146	105,202	424,818
	소 계	23,700	145,044	147,944	150,894	153,904	621,486
경비	인적보험료	900	11,016	11,236	11,456	11,676	46,284
	시설물관리	600	20,000	20,400	20,808	21,224	83,032
	소 계	1,500	31,016	31,636	32,264	32,900	129,316
계		**25,200**	**176,060**	**179,580**	**183,158**	**186,804**	**750,802**

소관 실·과·소		산 림 과
입	과 장	장 지 욱
안	팀 장	송 진 남
자	담 당 자	정 용 대 (480-5887)